

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 - 1호

『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1월 일

인천광역시의회의장

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자생 가능한 환경 및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및 구매계획 수립, 구매 실적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 ~ 안 제7조)
-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및 구매대상자 선정 기준(안 제8조 ~ 안 제9조)
-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)
-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7. 1. 16(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-6232, 팩스 440-876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·반여부와 그 사유

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·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 : ○ 성 명 : 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별 첨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사회적경제기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된 사업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.

가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「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

나.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

다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,
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라.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으로서 시장이
정하는 협회, 단체 등

2. “사회적경제기업 제품”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
나 서비스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
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
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적용대상 공공기관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(이하
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시 본청, 직속기
관, 사업소
2. 시 의회사무처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·지방공단
4.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
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
자기관 또는 출연기관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
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(이하

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중·장기 구매촉진 계획
2.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·홍보 계획
3.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) ① 시장은 매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(이하 “구매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이를 2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
2.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
3. 홍보, 교육, 포상,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4.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

제7조(구매실적)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1.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
2.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

3.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

4.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

5.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·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

②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물품 등을 제조·구매 계약하는 경우

2. 공사,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

제9조(구매대상자 선정 기준)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.

1.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

2.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

제10조(교육·훈련)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·훈련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11조(정보제공)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판로개척 지원)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, 종교시설, 문화·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, 기업 등과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판로개척, 교육·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평가 및 포상)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관련 실적을 평가하고 생산·소비촉진에 기여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「인천광역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사회적기업 육성법 ○ 제3조(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) ① 국가는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○ 제12조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 ①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<u>공공기관의 장(이하 "공공기관의 장"이라 한다)</u>은 <u>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(이하 "사회적기업제품"이라 한다)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</u> □ 협동조합 기본법 ○ 제95조의2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 ①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<u>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</u>
관련법규 정비대상	○ 해당없음
특이사항	○ 해당없음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조례안 제11조제2항

(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 의뢰 비용)

- 조례안 제12조제3항

(공공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 판로개척, 교육·홍보사업의 필요경비 일부 지원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동 조례안의 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,

- 해당 조항은 임의 규정으로 구체적 비용 추계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.

4. 작성자

경제산업국 사회적경제과장 고 태 성